장성군의회인사위원회 공고 제2023 - 12호

2023년도 제1회 장성군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 공고

2023년도 제1회 장성군의회 일반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 5월 25일

장성군의회인사위원회위원장

1 임용분야 및 인원

분 야	직 렬	임용직급	인원	근무기간	직무 내용
정책지원관	행 정 (일반행정)	지 방 행정주사보	1명	2년	·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자료 수집·조사·연구 등 ·「지방자치법」 제47조부터 제52조까지 규정과 관련된 의정활동 지원 ·「장성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제4조에 해당하는 업무
	시 설 (일반토목)	지 방 시설주사보	1명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2 법적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1조의3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장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 「지방공무원 인사제도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33호)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46호)

3 응시자격

가. 공통 응시자격(기준일 : 면접예정일)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등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 성별 및 주소지 : 제한 없음 (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응 시 연 령 : 20세 이상 (200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3. 29.>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다음 각 목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

나. 응시자격 요건 : 다음의 자격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자

채용분야	자 격 요 건
공통요건	※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상세히 명시**
정책지원관 (일반행정)	**【관련분야 경력】**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 등에서 법률자문, 법무행정, 공공행정 등의 연구·조사·분석·정책지원 등의 실무경력자 *** 공공기관 :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 및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cleaneye.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사무보조, 연구보조, 단순노무 등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음.**
정책지원관 (일반토목)	**【관련분야 경력】** - 국회, 지방의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연구소, 민간기업 등에서 토목분야의 연구·조사·분석·정책지원 등의 실무경력자 *** 공공기관 : 경영정보공개시스템(alio.go.kr) 및 지방공공기관통합공시(cleaneye.go.kr)에서 지정된 공공기관**

※ 관련분야 경력 인정범위

-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10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항**
- 시간제 근무자의 경력인정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을 인정함.
  (예시) 4년간 주20시간 시간제 근무 : 2년으로 인정 *** 근무시간 8시간을 1일로 인정**
- 관련분야 실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고, 임용 후 수행예정인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있는 경력이어야 함.

4 근무기간 및 보수

가. 근무기간 : 임용일로부터 2년

※ 근무기간은 업무실적에 따라 총 5년의 범위내에서 연장 가능

나. 보 수

(연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성과급적 연봉제를 적용하여 임용등급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자격 및 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함.

구 분	상한액	하한액	비 고
7급 상당	64,776천원	46,006천원	주40시간(09:00~18:00, 1일 8시간, 주5일근무)

(수당)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기타) 「고용노동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 희망 시, 가입가능 (※ 단,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5 시험 방법

가. 제1차 시험 : 서류전형

- 해당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을 서면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으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
- 합격자 발표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고시공고” 게시

나. 제2차 시험 : 면접시험

- 제1차 시험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 면접시험 실시
-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검정하여 면접평가
- 아래 5개 항목에 대해 상·중·하로 평가

※ 평정 요소

①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②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③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④ 예의·품행 및 성실성
⑤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 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시험 평정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 기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0조의3 제5항)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한 경우
- 면접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해 "하"로 평정한 경우

다.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별도 공고

· 면접 대상자 중 면접평가 점수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

· 신원조사 및 결격사유 등을 조회 후 최종결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시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최종합격자가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차 순위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를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 / 고시공고' 게시

6 시험일정

시험공고	응시원서 접수기간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일
'23.5.25.(목)	'23.6.12. ~ 6.14.	'23.6.22.(목)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별도공고	

※ 임용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는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의정활동/고시공고'** 게시예정
※ 면접시험 일자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시 개별통지(유선) 또는 공고할 예정임.
※ 시험일정은 서류검증, **기관사정(재공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7 원서접수

가. 접수기간 : 2023. 6. 12. ~ 6. 14. / 3일간

[근무시간(09:00~18:00) 내에 한함, 12:00~13:00 중식시간 제외]

나. 접 수 처 : 장성군의회 사무과 의회행정팀(☎061-390-7509)

- 주 소 :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200 장성군의회 인사담당자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등기우편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우편도착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우편 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 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는 제출서류와 동봉

8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필수제출)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별지 제1호 서식) 1부.

② 응시원서(별지 제2호 서식) 1부.

- 응시수수료 : 장성군수입증지(6~7급 : 7,000원) - 장성군청 민원봉사과 구입

※ 우편접수에 따른 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정부수입인지 불가)

③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 1부.

-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첨부(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음)

④ 자기소개서(별지 제4호 서식) 1부.

- A4용지 2~3매 이내로 자유롭게 기술하되,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성격의 장·단점, 앞으로의 각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

⑤ 직무수행계획서(별지 제5호 서식) 1부.

- 응시자의 임용예정 직무수행계획을 A4용지 5매 이내로 자유롭게 작성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별지 제6호 서식) 1부.

⑦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별지 제7호 서식) 1부.

⑧ 학위(석사 · 박사)논문 요약서(별지 제8호 서식) 1부.(해당자에 한함)

- 논문 표지사본 첨부

⑨ 최종학력 학위증서(또는 졸업증명서) 1부.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 원본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제출 가능

⑩ 주민등록 초본(남자의 경우 병적사항 기재된 것) 1부.

⑪ 개별사항(별지 제9호 서식) 1부.

※ 자격증, 경력, 학력이 응시자격 요건인 경우에는 이곳에 기재하지 않으며, 이력서(별지 제3호 서식)에 기재

⑫ 임용예정분야의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근무기간, 직위 및 담당업무(해당분야 세부 직무내용 정확히 기재), 증명서 발급 확인자 성명 및 서명(날인), 발행기관 직인 및 연락처 등을 반드시 기재
- 제출된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로 해당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서류전형 시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 경력(재직)증명서 상에 담당업무와 응시자격요건의 관련분야 업무내용이 상이할 경우 **"경력사실 확인증명서(별지 제10호 서식)" 추가 제출**

-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 경력은 반드시 주(週)단위 근무시간을 명시한 경력증명을 제출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시간과 시간이 불분명한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

⑬ 경력증빙자료(경력증명서나 재직증명서 제출 시, 필히 첨부)

- 사업자등록증 등 기관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1부. ※ 제출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기재
- 4대 보험 자격득실 이력확인서 중 1종(필수)
  고용보험(피보험자격 내역서), 국민연금(가입이력 포함된 가입증명서)
  건강보험(가입자 자격득실확인서), 산재보험(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중 1종
- 폐업자 정보 사실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제출한 경력이 폐업회사인 경우 '폐업자에 대한 업종 등의 정보내역 사실증명서' 추가제출(국세청)

⑭ 해당분야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1부.(원본지참, 해당자에 한함)

⑮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별지 제11호 서식) 1부.

9 기타사항

가.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나.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다.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마. 외국어로 기재된 서류(학력, 경력증명서 등)의 경우 공증 받은 한글 번역본을 첨부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바.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자.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도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후 시험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사유로 재공고 시 당초 응시자는 기 제출서류로 갈음

차.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시험시행 7일전까지 장성군의회 홈페이지 「**공지사항**」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카.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장성군의회사무과 의회행정팀 (☎ 061-390-7509)